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1
----------	----

2022. 9. 16.(금)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2년 9월 7일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13일

라. 상정일자: 2022년 9월 16일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 가. 제안이유

-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청렴도민감사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4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4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권한을 규정함(안 제6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제보 및 건의 사항의 접수부 등재 관리 및 처리결과의 통보 기한을 규정함(안 제8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책무와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 청렴도민감사관의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함(안 제10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감사관제 운영 규칙」 제정에 이어, 2013년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감사관 운영 규칙」으로 개정을 통해 시행해 온 ‘청렴감사관’

제도를 ‘청렴도민감사관’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목적임.

-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를 통한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현재 유사한 주민 참여 감사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7개 시, 도 교육청에서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 [타 시 · 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법령 제정 현황]

연번	기관	법령명	공 포 일
1	서울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2018.10.04
2	경기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2016.11.08
3	인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15.01.05
4	대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2016.02.19
5	세종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15.06.22
6	전북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012.06.08
7	충남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16.05.30

-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충북교육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는 청렴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 나. 주요내용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안 제4조의 임기 및 자격 규정에서는 그동안 해당 규칙에서 청렴감사관의 자격을 ‘감사 경험이 있는, 감사에 관한 전문 식견이 있는, 사회적 신망이 있고 청렴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으로 개념적으로만 규정했던 내용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과 대학교 조교수 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 시켜 감사와 관련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중 제1항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이 수행할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2항에서는 감사에 참여한 청렴도민감사관이 별지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청렴도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한 감사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개선 권고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담아 교육행정과 관련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에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의 감사와 관련된 건의·제보 사항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보 및 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효율적인 감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음. 또한, 안 제8조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제보·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명시해 해당 사안 처리 지연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청렴도민감사관들의 전문분야별 경험과 지식을 감사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감사실무 관련한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바, 담당부서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역량강화 연수 등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열린 감사제도 운영의 효과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청렴도민감사관들의 전문분야별 경험과 지식을 감사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감사실무 관련한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바, 담당부서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역량강화 연수 등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열린 감사제도 운영의 효과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열린 감사 제도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렴도민감사관”이란 도민의 교육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 소속으로 둔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의 위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자격 및 임기)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교육행정, 정보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의 간부
  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④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청렴도민감사관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2.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권고
  3. 교육수요자 고충 사항 및 부패 관련 민원 제보·건의
  4. 교육 관련 주요 정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② 감사에 참여한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 청렴도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의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 조치,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보·건의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이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보(건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없다.

1.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5.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8조(제보·건의사항의 처리)**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건의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보(건의)사항 접수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책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명정대한 열린 감사 정착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②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척·회피)**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청렴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타 시·도로 주민등록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1조(수당 등)**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감사관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 서식]

## 충청북도교육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제보(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귀하가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하신 제보(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명	
(처리결과)	

충청북도교육감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4호 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지킬 것이며, 만약 비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성 명 :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5호 서식]

# 감사 결과 보고서

청렴도민감사관용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시	
감사분야			
감사중점사항			
감사결과			
기타 개선 및 건의 사항			
년 월 일			
청렴도민감사관 : 성명) (서명)			
조치결과			감사반장

# 관계 법령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제11조(수당 등) 청렴도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어, 재정지출이 수반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현재 추진 중 사업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예산 증가액이 없으며 연 평균 예상 비용이 1억 원 미만 임.